

부속서 8A  
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

1. 각 당사국은 APEC 전기통신 및 정보 작업반(“APEC TEL”)에서 전기통신기기 적합성평가를 위한 APEC TEL 상호인정약정의 1단계 및 2단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.

2. 제8장(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)의 규정은 이 분야별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